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투명성 보고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27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투명성 보고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안 제76조제3항제25호)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3.

다. 회 부 일 : 2025. 9.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유인이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제25호).

### Ⅲ. 검토의견

#### 1. 투명성 보고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안 제76조제3항제25호)

##### 가. 개정안 요지

- 제64조의4 제1항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3항 제25호)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br>-----<br>-----.                            |
| 1. ~ 24. (생략)                                          | 1. ~ 24. (현행과 같음)                                     |
|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u>안</u> <u>니한 자</u> | 25. -----<br>----- <u>아</u><br><u>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리고,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처분을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보고서를 정직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관련 정보 고지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보고 의무,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의무 등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sup>1)</sup>하고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명성보고서 미제출 뿐 아니라 허위제출의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업자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230 |

- 
- 1)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의4.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